

2022년 재외교육기관 실태점검 사례집

| | | |
|----|----------------------------|----|
| I | 개 요 | 1 |
| II | 2022년 실태점검 점검교별 지적사항 | 20 |

I

개요

1. 목적 및 추진 경과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4. 점검항목

1. 목적 및 추진경과

가 목적

- 추진 목적
 -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적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 재무·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나 추진경과

- 2022년 실태점검 추진 경과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 '22. 2. 21.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교육부 승인 : '22. 3. 15.
 - 실태점검 추진 계획(안) 수립 : '22. 10. 6.
 - 실태점검 안내 및 자료접수 : '22.10월 ~ 11월
 - 실태점검(현장/서면) 수행 : '22.11월 ~ '23.2월
 - 교육부 결과 보고 : '23.3월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가 실태점검단 구성 방식

- 구성 방법
 - 재단인력 (2인) + 외부 전문가 (2인)
- ※ 외부전문가는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경험이 회계법인으로서 조달청(나라장터)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나 대상교 선정 방식

- 선정 방식
 - 점검 주기가 3년을 초과하였거나 민원이 발생했던 한국학교 위주로 교육부에서 선정

< 2022년 재외교육기관 실태점검 대상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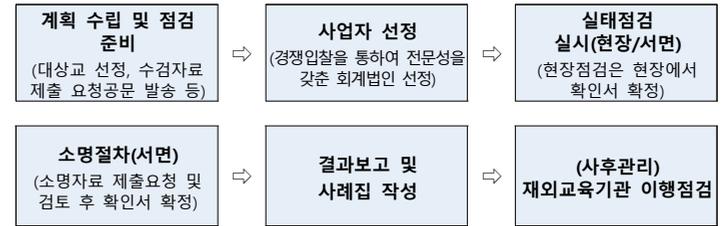
| 구분 | 연번 | 학교명 | 소재국 | 학생수 (명) | 재정규모 (USD) | 일정 |
|-------|----|------------|------|---------|------------|--------------------|
| 현장 점검 | 1 | 동경한국학교 | 일본 | 1,378 | 9,640,132 | '22.11.21.~25.(5일) |
| | 2 | 오사카금강학교 | 일본 | 127 | 4,692,772 | '22.12.12.~16.(5일) |
| | 3 | 젯다한국국제학교 | 사우디 | 4 | 228,649 | '22.12.26.~29.(4일) |
| 서면 점검 | 4 | 호치민한국국제학교 | 베트남 | 2,085 | 11,382,467 | '22.11월 ~ '23.1월 |
| | 5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싱가포르 | 395 | 10,120,454 | |
| | 6 | 상해한국학교 | 중국 | 971 | 9,836,695 | |
| | 7 | 천진한국국제학교 | 중국 | 633 | 6,587,627 | |
| | 8 | 홍콩한국국제학교 | 중국 | 118 | 3,546,455 | |
| | 9 | 웨이하이한국학교 | 중국 | 252 | 3,444,542 | |
| | 10 | 연변한국국제학교 | 중국 | 103 | 3,213,425 | |

※ 학생수 및 재정규모는 2021 회계연도 기말 시점 기준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가 실태점검 프로세스

- 업무 프로세스



- 각 단계별 업무 추진내용

| 단계 | 추진 일자 | 주요 추진 내용 |
|----|-----------------|---|
| 1 | 계획 수립 및 점검 준비 | ~'22.10. ▶ 실태점검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점검 대상 10개교 수검자료 제출 안내 및 접수 |
| 2 | 사업자 선정 | '22.11. ▶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한 용역 회계법인 선정 |
| 3 | 실태점검 실시 (현장/서면) | '22.11.~'23.1. ▶ 3개교에 대한 현장점검 및 7개교에 대한 서면점검 수행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수행(총 5개 영역 45개 항목) |
| 4 | 소명절차(서면) | '23.2. ▶ 확인서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접수 및 검토 ▶ 소명 반영하여 확인서 수정 후 재발송 |
| 5 | 결과보고 및 사례집 작성 | '23.3. ▶ 추가 소명 검토 후 지적사항 총 61건 확정 ▶ 결과정리 및 교육부 보고 ▶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 작성 |
| 6 | 재외교육기관 이행점검 | '23.6.~12. ▶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서면검토 |

4. 점검 항목

가 점검 항목

- 각 유형별 점검 항목 개요
 - 총 5개 영역 45개 점검 항목으로 서면 실태점검을 시행

| 영역 | 세부구분 | 전체 항목 | 서면점검 항목 | 비고 |
|------------|------|------------|------------|--------------------------------------|
| 일반사항 | | 6개 | 4개 | 서면점검 시 현장확인 불가한 점검항목 10개 제외 |
| 예산 및 결산 | 예산 | 8개 | 8개 | |
| | 결산 | 9개 | 9개 | |
| 세입 및 세출 | 세입 | 6개 | 4개 | |
| | 세출 | 9개 | 6개 | |
| 발전기금회계 | | 5개 | 3개 | |
| 계약, 물품관리 등 | | 2개 | 1개 | |
| 합계 | | 45개 | 35개 | |

- 2022년 점검범위
 - 최근 3개년(2019~2021회계연도) 점검 수행

II

2022년 실태점검 점검교별 지적사항

1. 대상교 재정 현황
2. 유형별 지적사항 현황
3. 점검교별 점검결과

1. 대상교 재정 현황

가 결산 규모

- 실태점검 대상 10개교의 세입·세출 총액은 USD 62,963,676임
 - 법인회계 USD 830,572
 - 교비회계 USD 60,940,668
 - 발전기금회계 USD 1,192,436

< 2022년 재외교육기관 실태점검 대상교 재정현황 >

(단위 : USD,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 연번 | 학교명 | 법인회계 | 교비회계 | 발전기금회계 | 합 계 |
|-----|------------|---------|------------|-----------|------------|
| 1 | 동경한국학교 | 38,957 | 9,516,396 | 84,780 | 9,640,133 |
| 2 | 오사카금강학교 | 0 | 4,692,772 | 0 | 4,692,772 |
| 3 | 젯다한국국제학교 | 0 | 228,289 | 361 | 228,650 |
| 4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0 | 10,626,448 | 756,019 | 11,382,467 |
| 5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776,363 | 8,997,181 | 63,151 | 9,836,695 |
| 6 | 상해한국학교 | 0 | 10,338,882 | 52,028 | 10,390,910 |
| 7 | 천진한국국제학교 | 12,233 | 6,380,117 | 195,277 | 6,587,627 |
| 8 | 홍콩한국국제학교 | 0 | 3,546,455 | 0 | 3,546,455 |
| 9 | 웨이하이한국학교 | 3,019 | 3,436,878 | 4,645 | 3,444,542 |
| 10 | 연변한국국제학교 | 0 | 3,177,250 | 36,175 | 3,213,425 |
| 합 계 | | 830,572 | 60,940,668 | 1,192,436 | 62,963,676 |

2. 유형별 지적사항 현황

가 유형별 지적사항 현황

- 2022년 실태점검 결과, 총 61건의 부적정 사례 확인
 - 유형별로는 예산 및 결산 관련 지적사항이 31건으로 가장 많음

| 구분 | 일반사항 | 예산 및 결산 | 세입 및 세출 | 발전기금회계 | 계약, 물품관리 등 | 합계 |
|-------|------|---------|---------|--------|------------|----|
| 지적 건수 | 10 | 31 | 16 | 2 | 2 | 61 |

나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 일반사항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해당기관 |
|--------------------|--------|
| 소액 현금 보관 한도액 초과 관리 | 동경한국학교 |

- 예산 및 결산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해당기관 |
|----------------|-------------|
| 예산 및 결산 자료 미공개 |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

○ 세입 및 세출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해당기관 |
|--------------------|--------------|
| 불납결손액 이사회 승인 절차 누락 | 상해한국학교 |
|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 오사키금강인터내셔널스쿨 |
|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 | 오사키금강인터내셔널스쿨 |
| 교비 집행 부당 | 젯다한국학교 |
| 적립금 목적 외 사용 | 젯다한국학교 |
| 주택수당 부당 수령 사용 등 | 젯다한국학교 |

○ 발전기금회계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해당기관 |
|--------------|--------------|
| 학교발전기금회계 미운영 | 오사키금강인터내셔널스쿨 |

○ 계약, 물품관리 등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해당기관 |
|--------------|------------|
| 취득 물품 관리 미흡 | 젯다한국학교 |
| 계약 관련 절차 미준수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다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세부

○ 일반사항 관련 주요 지적사항

1. 소액현금 보관 한도액 초과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장 제15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나, 소재국 금융환경 및 거래 관행으로 인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 현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데도,
- □□한국학교는 토요학교 관리 및 지도수당, 관내출장여비 등 각종 수당 및 경비 지출을 위해 2022년 월 평균 719,625엔(2022.11.22. 기준 한화 6,873,786원), 2021년 월 평균 1,263,628엔(2022.11.22. 기준 한화 12,070,048원)을 보관하는 등 현금보관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음

○ 예산 및 결산 관련 주요 지적사항

1. 예산서 및 결산서 미공개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장제8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심의·확정된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 및 관할공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41호 상 학교의 장은 심의·확정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부 및 관할공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 ○ 한국학교는 2019년 예산서(부속명서 포함) 및 2020년 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를 공개하면서 세입세출결산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2019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예산 부속명세서와 결산 부속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세입 및 세출 관련 주요 지적사항

1. 불납결손액 처리 부적정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6장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하여 이월 처리한 미수납금에 대하여는 학생의 인적사항, 미수납금 내역, 독촉장 발행일, 납입기한,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 관리부를 작성·관리하여 납입완료, 소멸시효의 완성 시까지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 하여야 함에도,
- △ 한국학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 수업료 71,869 RMB, 학교급식비 수입 1,494 RMB, 통학차량비 수입 15,683 RMB를 결손 처분하였으나, 별도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함

2. 규정에 없는 수당 및 지원금 지급

- 학교 내부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학원 취업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 및 그 설치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규정에서 급여란 급료 및 제수당을 말하며, 제수당은 가족수당, 직급수당, 통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말수당, 개근수당, 직무수당, 보충수당, 대강수당, 지도수당, 입시문제작성수당, 특수업무수당, 조정수당 및 그 밖에 이사장이 인정한 수당을 말하며, 「같은 규정」 제10조(가족수당)부터 제17조(기타수당)까지 각 수당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고 있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되어있어 학교회계의 집행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데도,
- 학교법인 ☆☆학원 및 학교는 규정에도 없는 주택수당을 부교장 AAA에게 2020년부터 매년 1,623,960엔(2020년 1,025,336엔/23.1.기준 한화9,712,363원 정도)을 지급하는 등 2022.12.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10명에게 주택수당 등 2개 항목으로 총 15,879,471엔(주택 15,492,256엔 / 휴대전화 387,485엔)을 관례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처리 지침」 제2장제27항 및 제32항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통학차량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수익자부담경비와 같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수익자부담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기타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학원 및 학교는 2022.3.31. 기준 자율경비(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 15,876,915엔이 존재함에도 학부모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별도 부외계좌로 보관하고 있음

4. 교비 집행 부당에 관한 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제5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장이며, 학교의 수입·지출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1항 및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장(회계)에 따르면 재외한국학교는 운영상 불가피하며 확실한 상황제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부 장관(10억 이하 차입의 경우 '관할 공관장')의 사전 허가를 거쳐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한국학교장은 2022.5.5.~7.30 기간 동안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나 관할 공관장의 사전 보고나 허가 없이 학교장 본인의 사적인 돈 90,490.98리알(23.1.한화기준 29,770,620원)을 향후 국고가 지원되면 상계할 목적으로 임의 집행하고 학교부채로 등록하는 등 교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고,
 - 더욱이 2022.6.19.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테니스장 보수 공사' 비용으로 27,438.48리알(23.1.한화기준 9,026,980원)을 집행하고도 공사가 부실하여 2022. 12.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음
- * 동 교는 '22. 3월, 공사 당시 재학생 6명(초등 저학년 2명, 미인가 유치원생 4명)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낮 기온이 40℃를 넘어 수업시간 중 야외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테니스장 보수 공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5. 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5장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정관 및 보수규정, 소재국 법령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하여 퇴직금 발생분을 계산하여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학교 교장 BBB는 2022. 3. 2.까지 퇴직자를 위해 적립된 '퇴직적립금' 94,397.43리알(23.1.한화기준 31,055,800원 정도)을 한국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없이 전액 인출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6. 주택수당 부당 수령 사용 등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환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학교 학교장 BBB는 2022.3.20.~8.19. (5개월)동안 현지에서 거주할 주택을 68,750리알(23.1.기준 한화 23,239,724원 정도)에 임대인 'RR 컴파운드'와 임대차 계약을 2022.2.21.에 작성해 임차료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령 받았으나,
 - 실제로는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알게 된 공사 업자로부터 받은 차명계좌(모르는 외국인 DD)에 기 수령한 주택임차료 68,750리알을 입금해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 증빙서로 제출하고, 그 금액을 공사 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BBB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교장 BBB는 파견복귀일(2022.8.30.) 전 약 1~2달 정도(2022. 7.~8.월/ 숙박여부는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등 진술하지 명확하지 않음)를 빈 교실(도서관, 유치원교실 등)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계약직 청소원 CCC(국적 필리핀, 女)에게 청소업무 외 추가적으로 개인의 아침과 점심 식사를 부탁해 제공 받은 사실이 있음

○ 발전기금회계 관련 주요 지적사항

1. 학교발전기금회계 미운영

- 「재외국민교육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하나,
- 학교법인 ☆☆학원 및 학교는 2019.4.26. '재외동포진흥재단'에서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100,000엔을 별도 회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등 2022.12. 현재까지 학교발전기금 관련 자체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총 38건의 학교발전기금 합계 200,945,911엔을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계약, 물품관리 등 관련 주요 지적사항

1. 계약 관련 절차 미준수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7장제11호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 ○○한국학교의 2018년도 졸업앨범 구매계약(32,400천원)을 물품 납품을 위한 견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가 사실상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총 7건, 266,600천원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3. 점검교별 점검결과

1 동경 한국학교

○ 지적사항

| 구분 | 지적 사항 |
|----------------------|--|
| 소액 현금 보관 한도액의 부적정 | 동경한국학교는 토요학교 관리 및 지도수당, 관내출장여비 등 각종 수당 및 경비 지출을 위해 2022년 월 평균 719,625엔(2022.11.22. 기준 한화 6,873,786원), 2021년 월평균 1,263,628엔(2022.11.22. 기준 한화 12,070,048원)을 보유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의 부적정 | 동경한국학교는 매년 내부 결재문서에 의하여 관리직(교장, 교감, 서무실장) 중 교감과 서무실장에 대하여 「교직원 급여 규정」에 없는 '교육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동경한국학교는 제일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연간 총 20회를 운영.계획하고 있음. 토요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수당에 대하여 「교직원 급여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교과목 담임 교사에 대하여는 회당 담임수당 2,000원, 지도수당으로 1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리수당 명목으로 회당 교장 1,500원, 교감 14,000원, 서무실장 8,500원, 토요학교 담당자 8,000원, 부담당자 5,000원을, 토요학교 지원근무자에게 시간당 1,500원 등의 「교직원 급여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 |
|-----------------------|--|
|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오류에 관한 사항 | <p>동경한국학교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결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시 상 법인회계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일체를 포함하여 작성함에 따라 교비회계 상 관련 수익과 지출이 각각 4,501,591円* 과대 계상되었음</p> <p>* 법인회계 세입·세출 총계</p> |
| 미수액 명세서 미작성에 관한 사항 | <p>동경한국학교는 2021 회계연도 기말 시점 미수액 총 3,891,250円*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p> <p>* 해당 금액은 2021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손처리된 금액 2,424,450엔을 제외한 금액임</p> |
| 계정과목 인식 오류에 관한 사항 | <p>동경한국학교는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에서 교직원 연수에 따라 지출된 중식비 421,300円(약 4,047천원)을 기타수용비가 아닌 여비로 인식하는 등 2021 회계연도 기중 총 871,300円(약 8,369천원)의 지출에 대하여 계정과목 분류 시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계정과목으로 인식하였음</p> |

2 오사카금강학교

○ 지적사항

| 구분 | 지적 사항 |
|--------------------|---|
|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의 부적정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규정에도 없는 주택수당을 부교장 ○○○에게 2020년부터 매년 1,623,960원(2020년 1,025,336원/2023.1.기준 한화9,712,363원 정도)을 지급하는 등 2022.12.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10명에게 주택수당 등 2개 항목으로 총 15,879,471원(주택 15,492,256원 / 휴대전화 387,485원)을 관례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
| 예산초과집행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2021년 교원인건비 관련 기 수립된 예산 219,588,369원 대비 초과 지출 229,662,366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0,073,997원을 초과집행하는 등 최근 3년 수립된 예산 799,811,332원 대비 총 59,840,235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
|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 준수 미흡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2021 회계연도 내부 결산보고를 결산 종료일인 2022.3.31. 이후 40일 이내인 2022.5.10.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동 기간까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21 회계연도 기준 해당 기한이 21일 지난 2022.5.31.에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계속적으로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지연되어 제출되고 있음</p> |

| | |
|------------------------------------|--|
| <p>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관련 운영 미흡</p>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일본 「사립학교법」에 따른 평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 까지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 발전기금전입금 수입 43,846,457엔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2019 회계연도 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학교발전기금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총 157,866,651엔에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 <p>학교발전기금회계 미운영</p>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2019. 4. 26. '재외동포진흥재단'에서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100,000엔을 별도 회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등 2022.12. 현재까지 학교발전기금 관련 자체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총 38건의 학교발전기금 합계 200,945,911엔을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p> |
| <p>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명세서 미작성</p>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2021 회계연도 결산일(2022.3.31.) 기준 미수액 총 15,043,164엔이 존재함에도,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명세서'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 | |
|--------------------------------------|--|
| <p>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 작성 오류</p>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2019.3.28.경 2019 회계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며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3.25.경 2020 회계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며 지난연도이월액 183,419,185엔을 480,411엔으로 잘못 기재하고 이자적립액 480,411엔을 0엔으로 잘못 기재하여 교육부 및 관할공관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2021.3.30. 경 2021 회계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며 지난연도이월액 183,966,824엔을 0엔으로 잘못 기재하여 교육부 및 관할공관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p> |
| <p>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p>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2022.3.31. 기준 자율경비(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 15,876,915엔이 존재함에도 학부모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별도 부외계좌로 보관하고 있음</p> |
| <p>불부합조서 작성 오류</p> | <p>학교법인 금강학원 및 학교는 일본 학교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현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미수금, 선급금(입체금), 선수금 등과 관련된 자금수지 변동으로 인한 다음연도이월금 금액과 예금잔액의 차이를 2019~2021 회계연도(2019.4.1.~2022.3.31.)의 결산 제출 시 불부합조서와 불부합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불부합 명세표를 작성·보고하지 아니하고, 지난연도이월금을 임의로 수정하여 보고함</p> |

3 젓다 한국국제학교

○ 지적사항

| 구 분 | 지적 사항 |
|-----------------------|---|
| 주택수당 부당 수령 사용 등 | <p>젓다한국학교 학교장 ○○○는 2022.3.20.~8.19.(5개월)동안 현지에서 거주할 주택을 68,750리알(2023.1.기준 한화 23,239,724원 정도)에 임대인 'RR 컴파운드'와 임대차 계약을 2022.2.21.에 작성해 임차료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령 받았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는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알게 된 공사 업자로부터 받은 차명계좌(모르는 외국인 dd)에 기 수령한 주택임차료 68,750리알을 입금해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 증빙서로 제출하고, 그 금액을 공사 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교장 ○○○는 파견복귀일(2022.8.30.) 전 약 1~2달 정도 (2022.7~8월/ 숙박여부는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등 진술하지 명확하지 않음)를 빈 교실(도서관, 유치원교실 등)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계약직 청소원 ○○(국적 필리핀 女)에게 청소업무 외 추가적으로 개인의 아침과 점심식사를 부탁해 제공 받은 사실이 있음 |
| 결산 대비 예산 초과 집행에 관한 사항 | <p>젓다한국학교의 2021년 직원및계약교직원인건비 관련 기 수립된 예산은 239,500리알이나 추가경정예산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312,224리알을 집행(24,605리알 초과 집행)하는 등 8개 항목에서 수립된 예산 573,395리알 대비 625,078리알을 지출하여 총 51,685리알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

| | |
|----------------------|--|
| 결산명세서 작성에 관한 사항 | <p>젓다한국학교는 2019년 기말시점(2020.2.28.) 결산서 상 이월액(201,588리알)과 예금잔액(202,656리알)이 1,068리알 불일치하고 있음에도 결산 시 불부합조서와 불부합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불부합 명세표를 작성·보고하지 않음</p> <p>또한, 학교 인가 만료로 인한 계좌정지로 인하여 2019년 10월 이후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거래를 현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및 2021년 기말시점 보유 중인 현금 각 108,367리알 및 116,301리알에 대하여 결산 시 현금실사를 통한 현금실사표를 작성·보고하지 않음</p> |
| 취득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p>젓다한국학교는 미상 연도부터 2022.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자산관리 대장은 2019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작성되어 해당 회계연도 이전 구입된 물품에 대해서 소재 및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p> <p>작성된 자산관리대장을 2019 회계연도 이후로 일정금액(한화 20만원)이상으로 한정된 물품에 대하여 현장점검기간(2022.12.25.~2022.12.30.) 중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2월 28일 취득한 자전거(취득가 1,480리알)의 학교 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2019년 3월 ~ 2022년 8월까지 취득한 자산 중 자산관리대장에는 존재하나 실제 소재 및 활용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자산이 총 17건 71,635.06리알(한화 23,566,947원)이 있음 |
| 결산서 상 이월금 불일치에 관한 사항 | <p>젓다한국학교의 2019년 기말시점(2020.2.28.) 결산서 상 다음연도이월금은 총 201,588리알(순세계잉여금)이나 다음 해인 2020년 지난연도이월금은 206,544리알(순세계잉여금)로 4,954리알 차이(2020 지난연도이월금>2019 다음연도이월금)가 나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 내부적으로 사유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p> |

| | |
|------------------------|--|
| 한글학교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 젯다한국학교는 2019회계연도 한글학교 운영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 13,443.36리알을 예산에 포함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한글학교와 관련된 예산 총 77,771.36리알을 세입 및 세출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예산서 및 결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 젯다한국학교는 2019년 예산서(부속명서 포함) 및 2020 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서 와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음 |
|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젯다한국학교는 2020 회계연도 결산서를 2021년 5월 31일 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의 36일이 지난 7월 6일에 제출하는 등 2019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가 지연되어 제출하였음 |
| 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젯다한국학교 교장 ○○○는 2022. 3. 2.까지 퇴직자를 위해 적립된 '퇴직적립금' 94,397.43리알(2023.1.한화기준 31,055,800원 정도)을 한국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없이 전액 인출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
| 용도가 불분명한 비용 집행에 관한사항 | 젯다한국학교의 교장 ○○○는 실제 정문 경비 용역을 실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 인가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명목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6월 12일 계약금으로 4,200리알을 지출하였고, 실제 학생의 참여가 불분명한 해양안전 체험학습 장비구입 관련 비용으로 2019년 10월 1일 2,250리알을 지출하는 등 지출 용도가 불분명한 비용으로 총 7,689.25리알을 지출함 |

| | |
|----------------------|---|
| 회계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에 관한 사항 | 젯다 한국학교의 교장 ○○○는 출납원을 지정하고 출납원 으로부터 날인은 받았으나, 실제 지출을 하는데 있어 지출명령의 행위와 출납행위를 동시에 수행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교비 집행 부당에 관한 사항 | 젯다한국학교장은 2022.5.5.~7.30. 기간 동안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나 관할 공관장의 사전 보고나 허가 없이 학교장 본인의 사적인 돈 90,490.98리알 (2023.1.한화기준 29,770,620원)을 향후 국고가 지원되면 상계 할 목적으로 임의 집행하고 학교부채로 등록하는 등 교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고, 더욱이 2022. 06. 19.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테니스장 보수 공사' 비용으로 27,438.48 리알(2023.1. 한화기준9,026,980원)을 집행하고도 공사가 부실하여 2022. 12.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음 * 동 교는 '22. 3월 공사 당시 재학생 6명(초등 저학년 2명, 미인가 유치원생 4명)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낮 기온이 40°C를 넘어 수업시간 중 야외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테니스장 보수 공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4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 지적사항

| 구 분 | 지적 사항 |
|------------------|--|
|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 미준수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종료일인 2022년 2월 28일 이후 같은 연도 4월 9일까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이 34일이 지난 2022년 5월 13일에 감사보고서가 지연되어 제출되고 있음 |
| 예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2020년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를 2020년 2월 24일까지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나 2020년 3월 2일 제출하여 7일 지연 제출하였음 |
| 예산서 및 결산서 미공개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2019년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2020 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를 공개하면서 세입세출결산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예산 부속명세서와 결산 부속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 예산 대비 결산 초과 집행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의 2021년 복리후생비 관련 기수립된 예산은 437,430 USD이나 추가경정예산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465,251 USD를 집행하는 등 5개 항목에서 수립된 예산 1,566,034 USD 대비 1,623,351 USD를 지출하여 총 57,317 USD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계약관련 절차 미준수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의 2018년도 졸업앨범 구매계약(32,400천원)을 물품 납품을 위한 견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가 사실상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총 7건, 266.600천원에 대해 일반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5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 지적사항

| 구 분 | 지적 사항 |
|--------------------------|---|
|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 미준수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종료일인 2022년 2월 28일 이후 같은 연도 4월 9일까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이 42일이 지난 2022년 5월 31일에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감사보고서가 지연되어 제출되고 있음 |
| 현금 및 예금명세서와 현금출납부 잔액 불일치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는 현금출납부 작성은 현금 및 예금의 입출금 내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결산서 상 현금 및 예금명세서는 정확한 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나, 2021 회계연도 발전기금회계의 현금출납부 및 결산서 상 잔액이 34,130 SGD 인데도 현금및예금명세서상에는 해당 금액을 341,300 SGD 로 작성하여 결산일 기준 현금및예금명세서 상 금액을 부실하게 작성함 |
| 결산 제출기한 미준수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는 2019 회계연도 및 2021 회계연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년 6월 30일(30일 지연) 및 2022년 6월 9일(9일 지연)에 각각 제출함 |

6 상해 한국학교

○ 지적사항

| 구 분 | 지적 사항 |
|-------------------------|---|
| 예산 초과 집행 | 상해한국학교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의 기타지출(잡지출) 과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을 531,382 CNY(예산현액 10,773,500 CNY, 결산액 11,304,882 CNY)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
|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 미준수 | 상해한국학교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종료일인 2022년 2월 28일 이후 같은 연도 4월 9일까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이 81일이 지난 2022년 6월 29일에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감사보고서가 지연되어 제출되고 있음 |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관련 회계처리 오류 | 상해한국학교는 2019 회계연도 및 2020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며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명세서 상 적립금의 전입액 및 전출액과 결산부속서류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 상 적립 및 인출(사용)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등 결산명세서 및 결산부속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있음 또한, 상해한국학교는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총 304,483 CNY를 학교회계 결산서의 세입·세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음 |
| 불납결손액 처리 부적정 | 상해한국학교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시 수업료 71,869 CNY, 학교급식비 수입 1,494 CNY, 통학차량비 수입 15,683 CNY를 결손 처분하였으나, 별도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함 |

7 천진 한국국제학교

○ 지적사항

| 구 분 | 지적 사항 |
|-----------------------------|---|
|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 미준수 | 천진한국국제학교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종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이후 같은 연도 4월 9일까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이 4일이 지난 2022년 4월 13일에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2019 회계연도와 2020 회계연도까지 감사보고서가 지연되어 제출되고 있음 |
| 예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 | 천진한국국제학교는 2020 회계연도 회계연도 개시일인 2020년 3월 1일 개시 5일 전인 2020년 2월 25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이 30일이 지난 2020년 3월 26일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등 2019년과 2020년 예산서를 기준보다 지연 제출함 |
| 예산대비 결산 초과 집행 | 천진한국국제학교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적립금전출액 과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을 4,840 CNY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개 항목에서 수립된 예산 4,319,690 CNY 대비 4,328,345 CNY를 지출하여 총 8,665CNY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세입·세출외현금명세서와 잔고증명서 차이 발생 오류 | 천진한국국제학교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외현금 명세서 상 잔액은 1,384,792 CNY이나 잔고증명서 상에는 1,385,149 CNY으로 357 CNY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 | |
|---------------------------|---|
| 자산취득비 회계처리 오류 | 천진한국국제학교는 2021 회계연도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여야 할 노트북 구입비 33,660 CNY를 교수학습자료구입비로 처리하는 등 2개 항목에서 총 64,660 CNY를 자산취득비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계정의 지출로 처리하였음 |
|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명세서 미작성 | 천진한국국제학교는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명세서 상 학부모 부담수입, 등록금수입, 지난연도수업료의 최종 예산액이 56,148CNY이나 해당 과목 결산액은 0으로서 결산 시점(2021.2.28.) 동 금액에 대한 미수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명세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까지 결산서 상 지난연도수업료 계정과목에 대한 예산 대비 실제 수취액에 대한 차이(미수액)액 총 107,714CNY가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명세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음 |

8 홍콩 한국국제학교

○ 지적사항

| 구 분 | 지적 사항 |
|------------------------|---|
|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 미준수 | 홍콩한국국제학교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종료일인 2022년 2월 28일 이후 같은 연도 4월 9일까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08일 지연된 같은 해 11월 3일에 제출하는 등 2019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까지 감사보고서가 지연 제출되고 있음 |
| 예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 | 홍콩한국국제학교는 20119 회계연도 개시일인 2020년 3월 1일 개시 5일전인 2019년 2월 24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제출일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예산서를 지연제출함 ※ 2019년 6월 20일 기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예산 미제출 대상교 상 포함 되어 있으며 공식 제출일은 확인이 어려움 |
| 예산대비 결산 초과 집행 | 홍콩한국국제학교 2019 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장학금 과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을 216,530 HKD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5개 항목에서 수립된 예산 19,362,976 HKD 대비 21,063,209 HKD를 지출하여 총 1,700,234 HKD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결산서 상 이월금 불일치 | 홍콩한국국제학교의 2019년 기말시점(2020.2.28.) 결산서 상 다음연도이월금은 총 △93,184 HKD(순세계잉여금)이나 다음 해인 2020년 지난연도이월금은 90,584 HKD(순세계잉여금)로 183,768 HKD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9 웨이하이 한국학교

○ 지적사항

| 구 분 | 지적 사항 |
|------------------|--|
| 예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 | 웨이하이한국학교는 2020 회계연도 회계연도 개시일인 2020년 3월 1일 개시 5일 전인 2020년 2월 25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이 24일이 지난 2020년 3월 20일에 예산서를 지연 제출하였음 |
| 예산 초과 집행 | 웨이하이한국학교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을 676 CNY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 까지 학교회계의 5개 항목에서 수립된 예산 854,800 CNY 대비 1,125,353 CNY를 지출하여 총 270,553 CNY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 미준수 | 웨이하이한국학교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종료일인 2022년 2월 28일 이후 같은 연도 4월 9일까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이 26일이 지난 2022년 5월 5일에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감사보고서가 지연되어 제출되고 있음 |
| 자산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 웨이하이한국학교는 2020년 1월 20일 교내 방송 장비 구입 지출 14,231.60 CNY를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타학생복지비(학생자치활동) 과목으로 처리하는 등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지출 합계금액 98,865.6 CNY를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음 |
| 교비회계 대여금 회수지연 | 웨이하이한국학교는 2018.3.29.경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교비회계의 수입 중 400,000 CNY를 위해한학문화전파유한공사(SPC)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22.2.28. 현재까지 349,000 CNY만을 회수하고 51,000 CNY를 회수하지 못함 ※ 당초 설립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자·교사 임차료 400,000 CNY 교비회계 대납(대여) 건은 "기관경고"로 2020.12.31. 기조치 됨 |

10 연변 한국국제학교

○ 지적사항

| 구 분 | 지적 사항 |
|---------------------------|--|
| 예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 | 연변한국국제학교는 2019 회계연도 개시일인 2019년 3월 1일 개시 5일 전인 2019년 2월 24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이 19일이 지난 2019년 3월 15일에 예산서를 제출하였음 |
| 예산 초과 집행 | 연변한국국제학교는 2019 회계연도 학교회계의 수도광열비 과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을 10,452 CNY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 까지 학교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9개 항목에서 수립된 예산 1,590,292 CNY 대비 1,849,009 CNY를 지출하여 총 258,717 CNY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 예산 상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등 미작성 | 연변한국국제학교는 2019 및 2021 회계연도 예산을 제출하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항목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예산부속서류인 [별지 제10의2호 서식]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및 [별지 제10의3호서식] 퇴직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예산부속서류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함 |
|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 미준수 | 연변한국국제학교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종료일인 2019년 2월 28일 이후 같은 연도 4월 9일까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이 26일이 지난 2020년 5월 5일에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각 26일, 52일, 34일 감사보고서를 지연하여 작성·제출하고 있음 |
| 결산서 제출 기한 미준수 | 연변한국국제학교는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시 제출 기한('20.5.31.)이 25일이 지난 2020년 6월 25일에 제출하는 등 2019 회계연도 및 2020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각 25일 지연하여 제출함 |

| | |
|---|---|
| <p>현금및예금명세서 첨부 증명자료 부적정</p> | <p>연변한국국제학교는 2019, 2020 회계연도 결산부속서류인 현금 및 예금명세서를 제출하며, 계좌 예금 잔액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은행)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행 현금 출납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p> |
| <p>자산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p> | <p>연변한국국제학교는 2020년 3월 27일 교사용 태블릿 구입 비용(20대) 34,800 RMB를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교수학습활동비 과목으로 처리하는 등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지출 합계금액 204,416 RMB를 학교운영비로 처리하였음</p> |
| <p>결산 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명세서 작성 오류</p> | <p>연변한국국제학교는 2020 회계연도 교비회계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상 적립금을 3,000,000 CNY(중국기업은행 0749-002132)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적립금 적립 및 사용명세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21 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결산명세서 상 4,500,000 CNY를 기타수입_적립금전입액으로 인식 및 세출 결산명세서 상 같은 금액(4,500,000 CNY)을 기타지출_적립금전출액으로 각각 인식하여 2021 회계연도 실제 적립금 적립액은 0 임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적립 및 사용명세서 상에는 당해연도 적립금 적립액이 4,500,000 CNY으로 증가하여 기말시점 적립금이 4,500,000 CNY인 것으로 작성 및 보고하였음</p> |